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점점 쪼그라드는 법학교과서

최근 어느 출판사 대표가 법학교재를 불법 복제한 로스쿨생 40여 명을 고소하였다. 정가 70만 원 정도의 교재들이 PDF파일로 복제되어 단돈 50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보니 법학교재를 주로 출간하는 20곳의 출판사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법학교과서는 불법복제의 대상이 되는지는 하는 것인지 쓴웃음을 짓게 된다.

얼마 전에 서울대 로스쿨 도서관의 학생열람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별 책상마다 그 많은 법학교재들 중에서 교과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로 강의하던 어느 교수는 상당수 학생들이 당당하게 수험서를 펴고 강의를 듣는 것을 보고 강의할 의욕조차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느 교수는 자신이 교과서를 출간하고 나니 같은 과목을 개설한 다른 교수로 수강생들이 몰려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로스쿨생들은 대부분 수험서를 통해 법학공부

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교과서는 강의용으로 마지못해 일시 이용할 뿐이고, 교과서가 없는 교수들은 아무 교재나 좋다고 하거나 심지어 수험서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본 법학분야에서 새로운 교과서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기존 교과서의 개정판이 나올 뿐이지 새 교과서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광윤직 선생님과 이재상 선생님의 제자나 후배 교수들이 공저자가 된 교과서들이 아직도 민법과 형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많이 답답하기도 하다. 사실 교수들에게는 논문이 재임용과 승진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교과서는 초판이 아니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로스쿨 평가에서도 교과서 등 저서는 제외되어 신진 교수들은 대부분 논문작성에 치중하고 있다. 사실상 심사위원들만 읽고 대부분 끝나버리는 별로 가치도 없는 논문들만 양산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교과서 등 저술로 이어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학술상도 논문이 아니면 아주 특별한 분야이거나 독특하게 작명된 저술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교과서는 이제 법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도 반기지 않고, 대형서점에서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제대로 된 교과서가 계속 나올 이유가 없고 로스쿨생들과 같은 독자들의 외면은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해결방법은 과연 없는가. 먼저 교수들이 기존의 출간된 책들 중에서 좋은 교과서를 선택해서 강의교재로 삼고 법학의 기본과 체계를 제대로 잡아주어야 하며, 변호사시험도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합격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생들도 3년이란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교과서로 벗 삼아 정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고득점 합격의 바른길이란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법학도를 위해 교과서를 출간하는 일이 비록 오랜 기간 매우 고된 작업이지만 교수로서 가장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업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법률신문)